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6. 9.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6년 9월 9일, 장철민의원 등 12인

나. 회 부 일 자: 2026년 9월 1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2차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2026.9.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원안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장철민의원)

2026년 10월 2일 시행 예정인 「검찰청법」 폐지와 「공소청법」 및 「중대범죄수사청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사와 기소가 제도적으로 분리되는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의 행정조직 기반이 마련되는 것에 맞추어, 2026년 8월 4일 우리나라 형사소송 절차의 기본법인 「형사소송법」을 개정하여 검사의 직접수사권을 폐지하여 수사의 주체를 사법경찰관으로 일원화하고, 검사는 공소제기 및 공소유

지를 담당하도록 하는 등 형사사법 체계에 맞게 정비한 바 있음.

이러한 형사사법 체계의 개편에 맞추어 새로운 형사사법 체계와 맞지 않는 내용을 정비하려는 것임(안 제38조의4제2항제2호).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수석전문위원 신항진)

개정안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¹⁾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하는 경우 공무원이나 공무수탁사인의 비밀유지의무에도 불구하고 관련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내용임(안 제38조의4제2항제2호).

개정안 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생략)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_____ _____ _____ _____

1) 「형사소송법」 [시행 2026. 10. 2., 법률 제21858호]

제245조의13(검사의 사실관계 확인 등) ① 검사는 공소제기 여부의 결정, 채수사요구 여부의 결정 및 공소유지에 필요한 때에는 피의자, 사건관계인, 전문가 또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거나 의견서 등 관련 자료를 제출받는 방법으로 사실관계를 확인(이하 “사실관계 확인”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고소인등은 검사에게 면담을 신청하여 의견진술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의 필요성을 검토하여 해당 신청의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사실관계 확인 및 제2항에 따른 고소인등의 면담을 통하여 취득한 진술·자료를 재판에서 증거로 사용할 수 없다.

④ 검사는 송치된 사건의 처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 재판기관, 수용기관 등 공무소에 대하여 전산 조회 또는 공문 발송 등의 방법으로 관련된 내용을 조회하거나 송부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⑤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의 의견을 청취할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현행	개정안
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생략)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4. (생략)	-----. 1. (현행과 같음) 2. -----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에 ----- 3. 4. (현행과 같음)

현행 제38조의4²⁾는 제38조³⁾ 및 제38조의2⁴⁾에 따라 보고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및 공무수탁사인이 취득한 정보나 자료를 누설하지 않도록 비밀유지의무를 부과하되(제38조의4제1항),

국세의 부과, 범죄의 수사, 통계의 작성 등 일정한 사유가 있는 경우

- 2)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제29조의 의무위반 여부의 확인을 위한 용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보고를 받는 업무를 위탁받은 자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
1. 국세의 부과·징수, 조세징송 및 조세법 소추를 위하여 「국세기본법」에 따라 해당 세무관서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2. 범죄의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기관의 장이 요청하는 경우
3. 통계의 작성을 위하여 「통계법」에 따라 국가데이터처장이 요청하는 경우
4. 그 밖에 정보 또는 자료 활용의 필요성 및 정보 또는 자료 유출 방지 조치의 안전성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하여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 3)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보고 및 검사) ① 산업통상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또는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에게 그 사업에 관한 보고를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석유정제업자등, 국제석유거래업자, 석유대체연료 제조업자등 또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사항에 관한 명령이나 제29조·제39조에 따른 의무의 위반 여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영업에 사용되는 차량을 포함한다)에 출입하여 장부·서류·시설 등 물건을 검사하거나 시료(試料)를 채취하게 할 수 있다.
- ②·③ (생략)
- 4)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8조의2(석유제품 판매가격의 보고·공개 및 표시) ①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및 석유판매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석유제품 판매가격을 보고하여야 한다.
- ② ~ ⑤ (생략)

에는 비밀유지의무의 예외로서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제38조의4제2항).

그런데 최근 「검찰청법」 폐지, 「공소청법」 신설 및 「형사소송법」 개정 등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라 검사를 수사기관에서 제외하고, 검사가 공소 제기 여부 등을 결정하기 위해서 사건관계인·전문가 등으로부터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제도가 마련되었는바,

법 제38조의4제2항에 따른 정보제공의 사유에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경우가 포함되는지 불분명한 측면이 있으므로,

동 개정안을 통해 검사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요청한 경우에도 자료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을 법률상 명확히 하는 동시에,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맞춰 관련 조문을 정비함으로써 법체계의 정합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한편, 2026년 9월 11일 현재 다른 위원회에 유사 취지의 개정안이 다수 발의·회부되어 있으므로 관련 법안의 심사 동향을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임(참고자료).

참고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조문정비 관련 법안

연번	의안번호	개정 대상 법률	상임위
1	21189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법사위
2	21191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법사위
3	21193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	법사위
4	21194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사위
5	21196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법사위
6	21198	형법	법사위
7	21199	외국법자문사법	법사위
8	21200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법사위
9	21202	헌정질서 파괴범죄의 공소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법사위
10	21203	통신비밀보호법	법사위
11	21206	군용물 등 범죄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사위
12	21209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법사위
13	21210	군사법원법	법사위
14	21211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법사위
15	21212	법무사법	법사위
16	21213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법사위
17	2121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법사위
18	21215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사위
19	21216	검사징계법	법사위
20	21217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등 국민참정권 침해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	법사위
21	21223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성평등위
22	21224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위
23	21225	인신매매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성평등위
24	21226	지방세기본법	행안위
25	21227	장애인복지법	복지위
26	21228	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	복지위
27	21229	노인복지법	복지위

연번	의안번호	개정 대상 법률	상임위
28	21230	아동복지법	복지위
29	21232	공무원 재해보상법	행안위
30	21233	공직선거법	행안위
31	21234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행안위
32	21235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복지위
33	21237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산중위
34	21243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정무위
35	21245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정무위
36	21246	군사기밀 보호법	국방위
37	21255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정무위
38	21265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운영위
39	21268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과방위

* 법안 발의 및 회부는 2026년 9월 11일 기준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6. 심사결과

원안가결

7.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심사 내용

개정안의 체계 및 자구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임.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법률 제 호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사업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8조의4제2항제2호 중 “수사를 위하여 「형사소송법」에”를 “수사 또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로, “수사기관의 장이”를 “수사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생 략)	제38조의4(비밀유지)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제38조 및 제38조의2에 따른 업무를 담 당하면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 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그 사용 목적에 맞는 범위에서 취득한 정보 또는 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② ----- ----- ----- ----- ----- -----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범죄의 <u>수사를 위하여 「형 사소송법」에 따라 해당 수사 기관의 장이</u> 요청하는 경우	2. ----- <u>수사 또는 「형사소송 법」 제245조의13에 따른 사 실관계 확인을 위하여 같은 법에 ----- 수사 기관의 장 또는 검사가</u> ---
3. · 4. (생 략)	3. · 4. (현행과 같음)